

2024년도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(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)

2025. 8.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- 목 차 -

1. 조사1국장이 마스크를 쓰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시정할 것 4
2. 조사1국장의 채용 시 자기소개서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 5
3. 유해발굴 사업에 동일 업체가 계속해서 낙찰되어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발주용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
4. 진실규명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조사1국장을 징계할 것 7
5.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도록 유념할 것 8
6. 위원장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 주장을 해온 만큼 자진사퇴가 필요하며 이런 인물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 9
7. 위원장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... 10
8. 조사1국 직원을 대상으로 행해진 교육에서 부적절한 발언 및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조사1국장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것 11

9. 조사1국장과 운영지원담당관실 서무팀이 위원회 조사 등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명기하여 진화위 명의로 진화위 소재 건물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절차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 12
10.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을 줄속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3
11. 진실화해위원회는 출석요구, 청문회, 검증, 자료제출명령 등의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진상규명 노력에 매진할 것 14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1. 조사1국장이 마스크를 쓰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시정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마스크 착용 해제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- 마스크 착용이 복무규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님 * 마스크 착용 사실 자체만으로 단정한 복장에 위배된다 볼 수 없음(인사처, '24.10.8.) <향후 추진계획> ○ 마스크 착용 해제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국회와 여론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사1국장에게 협조할 것을 권고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2. 조사1국장의 채용 시 자기소개서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사회경력 및 가치관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 밀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 어 제공하기 어려움 *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응시원서, 이력서, 직 무수행계획서 등은 기 제출함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3. 유해발굴 사업에 동일 업체가 계속 해서 낙찰되어 감 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발주용역 에 대한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위원회 「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」 제정 발령('25.3.10.) ○ '25년 유해발굴 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외부 평가위원 명단 확대 - 평가위원 후보 명단 추가 확보(9명) * 평가위원 후보 총 26명 ○ '25년 유해발굴 용역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 축소(90%에서 70%로) / 가격평가 배점 확대(10%에서 30%로) <향후 추진계획> ○ 유해발굴사업 용역 계약시 제정된 지침 및 기획재정부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 등 관련예규를 적용하여 제안서 평가 예정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4. 진실규명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조 사1국장을 징계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해당 발언 관련 고소(발) 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, 최종 ‘혐의없음’ 결정 - 추가 징계절차 검토 종료 <향후 추진계획> ○ 조사1국장의 발언 등이 진의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,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5.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도록 유념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소위원회,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 전 보고서 검토단계부터 2차 가해 표현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여 작성하였음. ○ 조사·국 소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‘신원기록심사보고’ 등을 진실규명결정 시 근거자료로 제시한 것으로, 내용을 선별적으로 발췌할 경우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였으나, - 진실규명 결정시 ‘신원기록 심사보고’ 등에 희생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표시하는 등 유족의 의견도 고려하여 표현을 조정하였음 <향후 추진계획> ○ '25년 상반기 조사보고서, 위원회 종합보고서 작성시에도 2차 가해 표현이 없도록 유념하겠음.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6. 위원장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반역 사적이고 반헌법 적 주장을 해온 만큼 자진사퇴가 필요하며 이런 인 물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 률을 개정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임명은 「과거사정리법」 개정 사항이며,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중임. <향후 추진계획> ○ 「과거사정리법」 개정안 통과 관련 소관 상임위와 적극 소통·협력 예정.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7. 위원장의 언론보 도에 대한 정정보 도 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○ 위원장(2대 김광동) 관련 자료를 제400회 국회(정기회) 국정감사('24. 10. ~ 11.)중 제출 완료 * 위원회 차원의 정정보도 요청(설명자료 배포 및 내역)은 서면답변('24. 10. 10.) 완료 <향후 추진계획> ○ 해당 사항 없음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8. 조사1국 직원을 대상으로 행해진 교육에서 부적절한 발언 및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조사1국장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해당 발언 관련 고소(발) 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, 최종 ‘혐의없음’ 결정 - 추가 징계절차 검토 종료 <향후 추진계획> ○ 조사1국장의 발언 등이 진의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,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9. 조사1국장과 운영 지원담당관실 서 무팀이 위원회 조 사 등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없음에 도 이를 명기하여 진화위 명의로 진 화위 소재 건물 관 리 사 무 소 에 CCTV 열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의 위법성을 검 토하고 대상자들 에 대한 적절한 징계 절차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 치를 취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조사1국장의 CCTV 열람 요청 공문상 ‘위원회 조사 등 업무추진’은 포괄적, 통상적 표현임 ○ 조사1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으로 CCTV를 열람하지 못하였으며, 빌딩 관리사무소에 사실에 반한 허위의 공문을 고의로 작성하여 발송했다고 보기 어려움 <향후 추진계획> ○ 앞으로는 공문으로 열람목적, 범위, 기간 등을 제출받아 신중히 검토 후 CCTV 열람을 요청하겠음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10.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사건의 실재여부, 가해 행위의 불법성 및 희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, 각종 명부, 입소기록, 판결문 등 기관의 공적 문헌 기록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·분석하여 피해자, 희생자를 판단하였음 ○ 또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심의·의결 절차를 거치고,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진실규명을 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였음 <향후 추진계획> ○ 조사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사건 처리 계획은 없음.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	11. 진실화해위원회 는 출석요구, 청문 회, 검증, 자료제 출명령 등의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진상규 명 노력에 매진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○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, 과거사정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을 지속 추진하여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진실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- 이 과정에서 국방부, 방첩사, 경찰청 등 각종 사건 관련 기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진실규명 처리에 적극 활용하였음. <향후 추진계획> ○ 조사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사건 처리 계획은 없으나, 종합보고서 작성시 각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겠음.